



##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

귀하께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(우편물 수신 주소의 건축물)은 관할 지자체 실태조사 결과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 대상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- ※ 벌 칙(『건축물관리법』 제51조 및 제52조)
-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  -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
-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
  -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



이에, **국토교통부와 경기도**는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소요되는 **공사비용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**하는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, **사업 신청은 LH건축물관리 지원센터홈페이지**를 통해 가능합니다. (사업추진절차: 뒷면참조)

※ 사업 안내 및 접수 문의 'LH건축물관리지원센터' 031) 250-8312, 8315, 8316

보다 자세한 사항은 LH건축물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(www.firesafety.or.kr)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 대상 건축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『건축물관리법』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(시·군·구)에 이의신청 가능

2024.5.

경기도지사

##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이 마지막으로 3년 연장됩니다!



정부지원 회재취약건축물의회재안전성능보강을위한 공사비용을 25년 12월 31일까지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. ※ 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하며 완료순으로 지원

지원기준 (기준사업비) 총공사비 40백만원/동 이내 (설계 조달 감리비용, 공사비용 포함) (분담율) 국가:지자체:자부담 = 1:1:1 (기준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)

지원대상 화재 발생 시 대형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피난약자이용시설 (의료·노유자시설, 지역 아동센터, 청소녀수련원) 다중이용업소 (고시원·목욕장·산후조리원·학원) 등이 입주해 있는 건축물로서 3층 이상, 가연성외장재 사용, 스프링클러 미설치 된 건축물입니다.

		화재취약요인		
분류	세부용도	기연성외장재 사용 *	스프링클러 미설치	1층 필로티 <i>주</i> 차장
피난약자 이용시설	의료·노유자시설, 지역 아동센터, 청소년수련원	•	•	무관
다중이용업소 (건축물 연면적 1천m²미만)	고시원, 목욕장, 산후조리원, 학원	•	•	•

\* 가연성 외장재란, 외단열 공법으로서 단열재· 외벽마감재 모두 난연재료 미만의 재료로 시공한 경우를 말함 (예. 드라이비트 공법 등)

**보강방법** 건축물 구조별로 **필수공법을 적용** (외장재 교체,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) 하고, 필요시 건축물 여건에 맞게 보강방법 추가 선택이 가능합니다.

필수	<b>1층 필로티 건축물</b> 1층 필로티 천장보강 + 외장재 교체 등	<b>일반건축물</b> (간이)스프링클러 등	
선 택	옥외피난계단 설치, 방화문 설치, 하향식 피난구 설치 등		

사업절차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용 지원을 받기 위해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.



※ 자세한 사항은 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 www.firesafety.or.kr 을 참고하세요.